

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262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조종만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457,920원 및 그 중 29,457,712원에 대하여 2020. 4. 6.부터 2021. 3. 10.까지 연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9.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2019. 10. 7. 접수 제456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나, 피고 B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이봉수

부동산의 표시

1. 일동의 건물의 표시

창원시 성산구 C,D에 있는 E오피스텔

[도로명 주소 창원시 성산구 F]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1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위락, 근린생활시설

지층 2343.64 m²(위락,근린시설) 1층 2343. 10m²(업무,근린시설)

2층 2343. 30m²(업무,근린시설) 3층 2343. 65m²(업무,근린시설)

4층~10층 각 2149.85m²(업무,근린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G 대2941.1

2.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D 대2948.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61.80m²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898분의 20.36

2. 소유권대지권 5898분의 20.36

- 이상 -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서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피고 A는 I 은행으로부터 기타채점운전자금 대출과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출 받을 때, 자신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위 용도로 대출 받음에 있어 원리금 상환 채무의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의뢰한 당사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 소유 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자입니다.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신용보증 의뢰인인 피고 A와의 사이에 2019. 1. 16부터 2023. 12. 20.까지의 기간 중 피고 A가 부담하게 될 신용보증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동시행령 및 원고와 위 채권은행과의 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피고 A가 대출 받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위 피고는 I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 그런데 피고 A는 신용보증 기간 중인 2019. 12. 21. 이자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으로서, 채권은행인 I 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서에 기한 채권액 30,218,198원의 보증이행을 구한 바,

이에 원고는 2020. 4. 6. 위 보증채무금을 I 은행에게 대위변제하고, 그 당일 원고가 피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할 미환급 보증료 금 760,486원을 변제에 임의 충당하여 원금은 29,457,712원(30,218,198원 - 760,486원)이 남아 있으며, 그 확정 손해금은 208원(2020. 4. 6. ~ 2020. 4. 6.까지 1일간, $760,486 \times 1/365 \times 10\%$)입니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29,457,920원(29,457,712원 + 208원)을 부담하여야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3. 피고들 간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주채무자로서 그 운영의 사업장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타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에 문제가 있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예상하여 지인인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스스로 무자력 상태에 있게 되고, 피고 B 역시 피고 A의 지인으로 경영상태 및 경제사정 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향후 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탈 목적으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피고들 간의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 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